

[학생활동규정]

1. 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동아인재대학 학생회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개발능력을 함양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제적 또는 정학처분 이상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 (권리,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정당한 학생활동에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 (금지활동) 본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자치활동의 성격을 넘는 학교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다.

제6조(효력정지) 본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7조 (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학술연구활동
- ②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친목 등 학생자치활동
- ⑤ 민방위 활동 - 학교 또는 주변화재 등 재난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8조 (기구)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의원회, 집행위원회, 동아일 연합회 및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대 의 원 회

제9조 (지위) 대의원회는 학생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0조 (구성) ① 대의원회는 직접선거에 의한 계열대표 구성하며 야간학부는 1인으로 구성한다.

(1,2년 대표 각각 1인씩)

② 대의원이 궐위 되었을 때는 7일 이내에 선출하여 대의원 의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 (의장) ①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의장은 1학년 대의원중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1일까지 한다.

제13조 (직능)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능을 가진다.

- ① 회칙개정, 발의 및 의결권
- ② 학생회비 책정, 심의 및 의결권
- ③ 집행부에서 심의제출한 예산안, 결산안, 사업계획 및 그 보고의 심의와 승인권
- ④ 본회의 회계, 서무 및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권
- ⑤ 학생회장의 불신임권

가. 대의원회는 학생회장이 본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나. 불신임 결의는 학생지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불신임 의결이 되었을 때는 해당 당사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하며 잔여 임기가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며 그 이하일 경우에 부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⑥ 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 요구권
- ⑦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14조 (소집)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4월, 9월에 소집하며 4월 정기총회는 전년도 부의장, 10월 정기총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학생회장 및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대의원의 소집은 7일전에 공고한다. 단, 전항의 단서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의결) ① 제13조 ①, ②, ⑤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기타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 (간사) 대의원회 의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3일 이내의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 3 장 집 행 부

제1절 학생회장

제17조 (지위)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18조 (임기) 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자격) 학생회장, 부회장의 피선 자격은 학생회 선거관리 규정 제4조와 같다.

제20조 (선거방법) 회장 및 부회장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21조 (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① 집행부 각 부서를 총괄한다.
- ②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한다.
- ③ 본회의 전체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결의안을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 ④ 집행부 각 부장의 해임권을 갖는다.
- ⑤ 학생회장은 대의원회의 출석 요구시 출석하여야 하며 대의원 회의의 의결 사항과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⑥ 학생회장은 학생활동의 중대사안에 관한 의견서를 학교 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 ⑦ 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⑧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집행한다.

제22조 (신분보장) 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과 학교 당국으로부터 신분을 보장 받으며 대의원 회의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부당하게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23조 (부학생회장) ① 부학생회장은 1인으로 구성한다.

- ②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제2절 집행위원회

제24조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각 부장으로 구성된다.

- ② 집행위원을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25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26조 (각부장 자격) 각 부장의 자격은 선거 관리 규정 제4조의 각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업무 및 권한)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①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 ② 각부 사업계획의 수행을 위한 예산 및 결산을 심의 편성하여 대의원회의에 상정한다.
- ③ 학생회의 전반에 걸친 사업계획을 심의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 ④ 학생의 자체예산을 검토 심의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 ⑤ 각부 부장은 업무수행을 위한 차장 1인을 두며 차장은 부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또한 필요시 학생회장의 승인을 얻어 각부산하에 특별연구회를 둘 수 있다.
- ⑥ 교수 학생 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단, 차장은 제외)
- ⑦ 본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두며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가. 총무부: 제반사업의 기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을 담당한다.

나. 홍보부: 본회는 활동에 관한 제반섭외, 홍보 및 봉사활동을 담당한다.

마. 체육부: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바. 여학생부: 여학생의 학내활동 및 체육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사. 복 지 부: 학내 학생회원들의 안전 및 복지를 담당한다.

아. 기 획 부: 본회의 모든 활동 기획을 담당한다.

자. 야간학부: 야간부를 대표하며, 위의 전부서에 대한 협의 및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제 4 장 동아리 연합회

제28조 (구성) 동아리 연합회는 본교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로 구성한다.

제29조 (회장 및 임원) ① 동아리 연합회의 회장 및 임원은 동아리연합회에서 선출하되, 단, 피 선거권은 동아리회장에 한한다.

② 동아리 연합회장은 동아리에 관한 제반 문제에 한해서 집행위원회에 참석 자격을 갖는다.

제30조 (업무 및 권한) ① 본 연합회는 본교 모든 동아리 행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아리 등록, 동아리 연합회에 해당된 예산집행 및 동아리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③ 그외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본 회칙 및 본 대학 학칙에 따른다.

제 5 장 학생 지도위원회

제1절 지도위원회

제31조 (지도위원회) 본회 지도위원회는 학생회를 지도한다.

제32조 (구성) 지도위원은 학생지원과을 위원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연장자 순으로 2개월씩으로 하며 대의원회 상임위원회별 각 1명의 지도위원(교수)이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이 된다. 지도위원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학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제33조 (직능)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 ① 학생 자치활동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 ② 집행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③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④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 ⑤ 예산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학생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제2절 교수?학생 협의회

제34조 (목적) 본 기구는 학생회의 건전한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신장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 (구성) 지도위원회 위원, 대의원 의장, 학생회장 및 집행위원으로 한다.

제 6 장 재 정

제36조 (회비) ①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충당하고 본회 활동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회비는 학교가 징수 및 관리하고 학생회장의 요구에 의해 집행된다.

제3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한다.

제38조 (예산편성) ① 학생회장은 매년 3월 30일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심의 의결하여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안이 소정 기일내에 통과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회장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본회의 회비는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제39조 (예산집행) 예산의 집행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각 기구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를 기록하여 근거를 남겨야 한다.

제40조 (결산) ① 학생회장은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중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기 학생회장은 결산서를 회계연도 15일까지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감사) 대의원회는 결산 승인전에 학생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지도위원회를 거쳐 이를 공고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1994년 학생회는 본 회칙에 의거하여 시행됨을 원칙으로 하나, 임시학생회 구성시에 합의 된 내용을 수렴키로 하며, 그 기간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개정) 학생회칙 제1조 명칭을 동아인재대학 총학생회로, 제10조 1항의 대의원 구성을 계열 대표로 하고, 제27조 야간부 신설한다.

II. 선거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아인재대학 학생회 회원의 민주절차에 의하여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진정한 민주학원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함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선거권) 본회의 회원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단, 휴학, 제적 및 정학 상태에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4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품행이 단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 ②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인 자.
- ③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④ 출석 상황이 90% 이상인 자.
- ⑤ 대의원이 학생회장, 부회장 입후보시 20일 전에 대의원직을 사임해야 한다.

제5조 (선거시기) 선거시기는 매학년도 10월중에 선출한다. 단, 10월중에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내에 실시한다.

제6조 (선거방법) 본회의 모든 선거는 보통, 비밀, 평등, 직접선거로 한다.

제7조 (선거관리비용) 선거관리비용은 공탁금과 학생회비로 충당하며 공탁금의 결정은 선관위에 위임하며 당락에 관계없이 반환치 않는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 (자격) 해당 학기등록을 필한 자로 사무능력이 있는 자.

제9조 (구성일시) ①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 실시 2주일 전에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구성원은 대의원장이 추천하는 대의원 1명,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집행부원 6명, 지도위원 4명이며 위원장은 학생과장이 된다. 단, 당선공고후 3일이내에 이를 해체한다.

제10조 (업무 및 권한) 선거관리, 세칙 제정 및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관하며 선거사무에 관한 중요사항 발생시에는 선관위에서 심의 결정하며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선거일시 결정공고
- ②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일체
- ③ 선거 및 입후보자에 대한 공시 사무일체
- ④ 당선자 선포 및 공고

- ⑤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일체
- ⑥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일체

제11조 (선거일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 10이전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일정을 공고한다.

제12조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 개시 3일전에 선거권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에 한해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13조 (선거인명부 열람) 본회 회원은 누구나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열람기간내에 문서로서 선관위원장에게 이의서를 제출하고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금지사항) 선관위원은 특정 입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 동원이 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학생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관위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 3 장 입후보 및 등록

제15조 (등록절차) 회장, 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입후보 등록기간 3일중에 선관위에서 지정한 소정 용지와 다음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 ① 사진 3매 (8"×10")
- ② 해당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통 (사본)
- ③ 전학기 성적증명서 및 출석상황 증명서 각각 1통
- ④ 입후보자 추천서 (추천인은 50인으로 하며, 1개 학과당 3명이상의 추천을 받는다.)
- ⑤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⑥ 선거공약 및 프랑카드 , 벽보문구 제작 문구

제16조 (후보자 등록) 런닝 메이트제로 회장, 부회장 등 2인이 1개조로 동시 등록한다.

제 4 장 선거운동

제17조 (운동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이 끝난 직후부터 할 수 있다.

제18조 (운동방법) 운동은 소견발표, 벽보, 현수막 기타 유인물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소견 발표는 선관위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한한다.

제19조 (금지사항) 선거의 순수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 유포, 금품수수, 접대, 폭행, 협박, 납치행위 등을 금한다.

제20조 (후보자 자격상실) 제19조를 위반하였을 시는 선관위에서 심의하여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며 이를 학교당국에 고발한다.

제 5 장 투표 및 개표

제21조 (투표방법) 비밀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실시한다.

제22조 (참관인) 입후보자는 투표와 개표에 있어서 본회원으로 참관인을 2명 입회시킬 수 있다. 단, 참관인의 사고시에는 투표개시직전까지 교체할 수 있다.

제23조 (개표) 개표시에 선관위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제24조 (이의제소) 이의가 있을 때나 부정투표 기타 본 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되어 투표 참관인이 그 시정을 요구하였을 때는 선관위재적위원 2/3이상의 의결에 따라 개표 결과를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단, 개표 완료후 24시간 이내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6 장 당 선 인

제25조 (당선결정) 선관위에서 유효 투표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6조(단일 런닝메이트) 후보자가 1개조의 런닝메이트일 때는 무투표 당선 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1/2 이상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하고 1/2 미만 득표시 차기학생회는 대의원회 협의체로 운영한다.

제27조 (당선확정)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선관위는 즉시 학장에게 보고하고 당선인에게 통보 및 이를 공고한다.

제 7 장 재 선 거

제28조 (재선거) 다음 사항 각호에 해당하였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① 동점 투표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점 득점자끼리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② 당선인이 없을 때
- ③ 선거가 전부 무효일 때
- ④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임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될 때

제29조 (실시) 재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재선거가 학생 내부의 갈등 소지가 낳고, 선거인수가 현저히 저하되어 학생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때엔 선거관리위원회의 2/3 찬성과 대의원회의 의결로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며 차기 학생회는 대의원회가 총학생회 조직에 준하는 집행부를 구성하여 대신한다.

제 8 장 보궐선거

제30조 (보궐선거) 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와 잔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199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규정되지 않는 조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신설) 제15조 6항(선거공약 및 벽보, 프랑카드 제작 문구)을 신설한다.

Ⅲ. 학생 상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교육법과 본 대학 학칙의 정신에 입각하여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학생지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상벌에 관한 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생상벌 위원회 구성) ①본 위원회는 학장,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과주임 및 학생지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유고시 학생과장이 이를 대행한다.

② (학생지도위원회 구성) 학생회칙 제32조에 따른다.

제3조 (포상종류) 포상은 공로상, 모범상으로 하고 학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외의 포상도 할 수 있다.

제4조 (수상대상)

1. 공로상은 학생으로서 제반본분을 다하고 대학발전 및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2. 모범상은 본 대학내에서 타 학생의 모범이 된 자에게 수여한다.

단, 위 각항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도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포상내용) 전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제6조 (학생활동 제한) 다음 1, 2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활동(학보사원, 방송국원, 각 동아리대표 포함) 및 기타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가 상실 또는 정지된다.

1. 다음 7조 사항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학생회 간부증

① 회장단은 매학기 B학점이상 취득치 못한 자 또는 수강신청 과목중 2개 과목 이상 과락 이 있는 자.

② 각 부장은 매학기 평균 C학점 이상 취득치 못한 자 또는 수강신청과목중 2개 과목 이상 과락 이 있는 자.

제7조 (징계) 학생이 그 본분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및 퇴학에 처하며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징 계 조 항근 신

(3-7)유기정학

(8-14일)무기정학

(15일이상)제적 및

퇴 학1. 규율을 문란케 한 자○○2. 학내의 환경을 더럽힌 자○○3. 단체행사에서 무단 이탈하거나 교란한 자○○4. 시험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자○○○5. 학내?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6. 학우에게 협박 또는 폭행한 자○○○○○

징 계 조 항근 신

(3-7)유기정학

(8-14일)무기정학

(15일이상)제적 및

퇴 학7. 학내에서 음주 또는 음주하고 등교한 자○○8. 이유없이 교직원을 비방, 욕되게 한 자.○○9. 허가없이 광고물 및 인쇄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한 자○○10. 고의로 학교시설 및 교구를 파손하거나 반출한 자○○11. 학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을 선동한 자○○12. 개인 또는 단체행위로 수업을 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초래케한 자○○13. 허가없이 동아리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14. 교직원에게 반항하거나 폭언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15. 학내?외에서 불온 인쇄물을 부착하거나 살포한 자○○16. 학외에서 본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자○○17.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자○○18. 불법적으로 단체행위를 선동한 자○○19. 무계출, 결석이 4주간을 초과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무상한 자○○20. 불법적으로 학내에서 영리행위를 하게 하거나 한 자

(무단 상행위자)○○21.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제8조 (징계심의) ① 근신, 유기정학은 학생지도 위원회 위원과 해당학과 교수와 심의 결정한다.

② 무기정학, 퇴학은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9조 (징계감면) 학장은 징계대상자나 징계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태도가 현저할 때에는 그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① 동점 투표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점 득점자끼리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당선인이 없을 때

③ 선거가 전부

제10조 (자퇴권고) 퇴학에 처벌될 학생중 개전의 장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칙 제20조에 의한 자진 퇴학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 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학장이 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1994년 3월 15일부터 한다.

IV. 동아리 활동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애국애교의 정신을 고취시키며 개인의 취미와 소질을 개발하여 건전한 학생활동을 하는데 있다.

제2조 (방침) ① 학예술 활동, 봉사활동을 중점 지원한다.

② 능률적인 부서활동의 전개로 민주적 사고를 증진한다.

제3조 (동아리구성) ① 모든 동아리의 구성원은 본 대학 재학생에 한한다.

② 각 동아리는 20명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는 전문 동아리는 예외로 한다.

③ 학생의 동아리 가입은 1인 1개 동아리로 하며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모든 동아리는 지도교수 1명 이상을 추대하여야 한다.

제4조 (동아리등록) ① 동아리등록은 매학기초 1개월 이내에 하며 아래의 서류(소정양식)를 첨부하여 학생지원과에 제출한다.

? 동아리 등록 신청서

? 회 칙

? 지도교수 승낙서

? 임원조직표

? 동아리 회원명단

? 동아리 행사 계획서

② 학생 동아리 회원 명단에 등록 되지 않은 학생은 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③ 각 동아리는 동아리 연합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동아리의 등록은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동아리 행사 허가) ① 동아리 행사 신고서는 행사 7일 이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생과에 제출하고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행사에 필요한 공고물(포스터, 현수막) 및 기타 유인물을 공고 또는 제작 배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생과를 경유하여 학장의 원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는 제작 배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생가를 경유하여 학장의 원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아리행사에 강의실이나 체육관 등 시설물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타 대학 또는 타 기관과의 연합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전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동아리 행사 결과보고) 행사종료 즉시 그 결과를 지도교수 또는 동아리 대표 학생이 학생지원과에 보고(전화, 구두, 서면)한다.

제7조 (동아리 활동 준수 사항) ① 학내외의 모든 행사는 시종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집회허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사를 할 때에는 학칙에 의하여 조치한다.

- ③ 동아리 활동에 있어 다음 사항을 금한다.
- ? 퇴폐적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 ? 입장권 판매 등 영리 행위
 - ? 승인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 공고하는 행위
 - ? 행사 찬조금 청탁행위
 - ? 각종 유인물에 업체를 광고하는 행위
 - ? 학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 인사의 초청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199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제3조회원수를 20명으로 하고 전문 동아리는 예외로 한다.

V. 학생준수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학생 준수 규정은 본 대학생들이 진리탐구, 덕성함양, 기능계발의 학훈아래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본 학생 준수 규정은 학칙과 회칙에 근거하여 학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학생증 및 뺏지

제3조 입학수속을 마친 학생은 즉시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제4조 학생은 매학기 등록하는 즉시 학생증에 등록필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학생증을 휴대하고 뺏지를 폐용해야 하며 본 대학의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시는 언제든지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학생증 및 뺏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타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학생증을 변조할 수 없다.

제7조 ① 학생증 또는 뺏지를 분실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명백히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생과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재 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소정의 발급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학생단체등록, 집회, 게시, 인쇄물, 배포관계

제8조 학칙 제35조에 의거하여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지도교수를 정하여 대표자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학생과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전조에 의하여 등록 신청한 학생 단체는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학생 단체의 활동기간은 학년 단위로 하며 계속 활동을 희망할 때에는 매 학기초 1개월 이내 재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 재등록신청이 없는 단체는 해산한 것으로 한다.

제11조 집회 및 결사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승낙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집회를 하고자 할 때는 소정 양식에 의한 집회 허가원을 7일 이내에 학생지원과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학내에서 광고, 인쇄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생지원과를 경유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허가된 광고, 게시물은 학생과에서 검인을 받고 게시장소와 게시시간을 지정 받은 후 계

시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게시자가 게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5조 본 대학내에 외부 기관 또는 개인의 광고 게시, 인쇄물 배포시에는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4 장 각종 행사 참여

제16조 학생은 본 대학에서 실시하는 각종 기념식, 특강 등의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17조 학생이 운동경기와 학술경연을 포함한 대외 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각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지원과를 경유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때 학생의 출석을 해당교수는 인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정기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중에는 운동경기와 학술경연을 포함한 일체의 대외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단, 행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에 학장의 승인을 얻어 참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